

**영등포구의회
제152회 임시회**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4. 15.

**行政委員會
專門委員 李憲永**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 272 호로 2010년 4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효율적인 위원회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, 유사중복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물가대책위원회는 비상설화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.

- 위원은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. (안 제4조제4항)
-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 후 자동 해촉됨에 따라 삭제. (안 제6조)
-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삭제. (안 제7조)
- 비상설화 됨에 따라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. (안 제8조)

나.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.

(안 제4조제2항, 제3항)

다.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중복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폐지.

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근거

- 행정안전부 「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」
- 영등포구 위원회 정비 계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●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「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」과 영등포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가.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를 안건 발생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 후 자동 해촉할 수 있도록 비상설 근거를 신설 하였으며, 이와 배치되는 제6조 위원의 임기, 제7조 위원의 해촉,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중 비상설화와 관련 없는 조항은 삭제.
- 나.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 주무부서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무중심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음.
- 다.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종복 기능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였음.

●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